<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03.26.

# 하나재형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AG126]

|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 | | | | | 하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br>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정보는 **하나재형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 재형저축으로서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 명칭 | 하나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하나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합니다. |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국내외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합니다. |
|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br>-자산배분은 각 시장의 상황 및 전망에 따라 지역 및 자산별 비중을 조절합니다. |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br>-자산배분은 각 시장의 상황 및 전망에 따라 지역 및 자산별 비중을 조절합니다.. |

* 비교지수(Benchmark)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전략적 자산배분을 실행하는 펀드로서 특정 지수와의 비교가능성이 낮아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할 수 있는 비교지수 또는 참조지수가 없으므로 투자판단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하나자산운용

| | |
|---|---|
| |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br>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

**투자비용**

(2024년 03월 05일 기준)

| 재형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없음 | 0.862 | 0.500 | - | 0.985 | 101 | 207 | 318 | 558 | 1,270 |

*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및 구체적인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도표의 총보수·비용은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을 의미합니다.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예상 보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알 수 없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및 피투자기구의 비용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포함)·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다만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예시의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알 수 없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2024년 03월 05일 기준)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
|---|---|---|---|---|---|---|
| | | 2023/03/06 ~ 2024/03/05 | 2022/03/06 ~ 2024/03/05 | 2021/03/06 ~ 2024/03/05 | 2019/03/06 ~ 2024/03/05 | (%) |
| 하나재형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2013-03-06 | 6.81 | -1.31 | -1.03 | 2.04 | 1.14 |
| 수익률 변동성(%) | 2013-03-06 | 5.24 | 6.68 | 6.14 | 7.98 | 6.56 |

*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전략적 자산배분을 실행하는 펀드로서 특정 지수와의 비교가능성이 낮아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할 수 있는 비교지수 또는 참조지수가 없으므로 투자판단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별도로 표시한 기준일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 인력**

(2024년 03월 26일 기준)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형_국내외혼합, %)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 집합투자기구수(개) | 운용규모(억원)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책임 | 박문수 | 1985 | 차장 | 28 | 16,805 | - | - | 9.78 | -0.45 | 7.7년 |
| 책임 | 임영근 | 1993 | 대리 | 42 | 17,317 | - | - | 9.78 | -0.45 | 1.8년 |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

<table>
<tr><td></td><td>합니다.<br>*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br>*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br>*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td></tr>
<tr><td>투자자<br>유의사항</td><td>•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r>·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주요투자<br>위험</td><td>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 내용</th></tr>
<tr><td>투자원본<br>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td></tr>
<tr><td>시장위험 및<br>개별위험</td><td>집합투자재산을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재간접투자<br>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이므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br>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 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환율변동에<br>따른 위험</td><td>해외 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 간의 환율변동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환헷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roll over, NAV 변동, 선물/선도환 시장 변화, 목표비율과 실제비율과의 차이, 환헷지 시행 수준으로 인한 환율 변동 관련위험은 남아있습니다.<br>본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은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그리고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USD, EUR)에 대하여 주로 환위험을 헷지할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환율변동위험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사건 및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유통국가의 경제적인 제반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피투자집합</td><td>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하나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 colspan="3">
<table>
<tr><td>투자기구<br>투자위험</td><td>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손익과 연동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br>또한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청산시 본 투자신탁 또한 해지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외국세법에<br>의한 과세에<br>따른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해당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매입<br>방법</td><td>· 17시 이전 :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br>· 17시 경과 후 : 제4영업일 기준가 매입</td><td rowspan="2">환매<br>방법</td><td rowspan="2">· 17시 이전 : 제5영업일 기준가 제9영업일 지급<br>· 17시 경과 후 : 제6영업일 기준가 제10영업일 지급</td></tr>
<tr><td>환매<br>수수료</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
· 산정 방법<br>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br>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br>
· 공시방법<br>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br>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td></tr>
<tr><td>과세</td><td colspan="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br>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br>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table>
<tr><th colspan="2">재형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는 재형저축을 대상으로 함)</th></tr>
<tr><td>근거</td><td>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td></tr>
<tr><td>가입자격</td><td>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br>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br>② ①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br>*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td></tr>
<tr><td>가입기간</td><td>2015.12.31.까지</td></tr>
<tr><td>저축계약기간</td><td>(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br>다만,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최대 10년)</td></tr>
<tr><td>가입한도</td><td>분기별 300만원 이내<br>(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td></tr>
<tr><td>세제혜택</td><td>계약기간 7년 유지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다만, 최초 계약기간 7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 등의 인출시 연장한 기간 및 연장 이전 7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 colspan="3"><table>
<tr><td></td><td>않음<br>※ 다만, 재형저축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10)가 부과됨</td></tr>
<tr><td>감면세액추징</td><td>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br>1. 천재・지변<br>2. 저축자의 퇴직<br>3. 사업장의 폐업<br>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br>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br>(특별해지하려는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td></tr>
<tr><td colspan="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재형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하나자산운용<br>대표전화 : 02-3771-7800, 홈페이지 : www.hanaam.com</td></tr>
<tr><td>모집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조좌(1좌단위 모집)</td></tr>
<tr><td>효력발생(예정)일</td><td>2024년 05월 31일</td><td>존속 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4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